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

국토교통부

원주지방국토관리청

보다 나은 정부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2020년도 보상지침 수립 및 시행 알림

1. 보상과-783(2020.02.24.)호와 관련입니다.

2. 한국감정원에서 '20년도 법규보상액 통계자료를 발표함에 따라,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 도로건설 및 하천사업의 손실보상금액 산정 시 적용할 2020년도 보상지침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근거법령 :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, 제48조, 54조 내지 제55조

나. 적용시기 : 2020년도 지침 수립일로부터

다. 주거이전비, 이사비, 영농손실액 : 한국감정원 통계자료 활용

* 주거이전비의 경우 2019년도 월평균 가계지출비 통계자료가 공표되지 아니하여, 공표되기 전까지 2019년도 보상지침의 주거이전비 산정금액을 적용

붙임 : 2020년도 보상지침(주거비, 이사비, 영농비) 1부. 끝.

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

수신자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(운영지원과장),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(운영지원과장), 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(운영지원과장)

주무관 사무관대우 보상과장 관리국장 전결 2020. 5. 12.

협조자

시행 보상과-1616 접수

우 26460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50(반곡동)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/ http://www.molit.go.kr/wrocm

전화번호 033-769-5753 팩스번호 033-748-3832 / ksm891001@molit.go.kr / 대국민 공개

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.